제3071호
2024. 3. 7.

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
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
전화 : 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람	기관의장

구 보

◉ 자치법규
[입법예고]
제2024-282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2
제2024-283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····· 5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◉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
서울특별시중구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282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3월 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❍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'기부채납 일'이 아닌, '사용허가 일'이 되도록 개정

3. 의견제출

❍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5003, FAX: 3396-8670, 전자우편 : WH840107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 중 “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,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	제15조(무상사용기간) ----------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

[입법예고]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283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3월 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❍ 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여 구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구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 삭제

-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

❍ 별지 서식 신설 및 현행화

- 별지 제22호 서식 현행화 및 별지 제42, 43호 서식 신설

3. 의견제출

❍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5003, FAX: 3396-8670, 전자우편 : WH840107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유재산현황(총괄표)(별지 제42호서식)
2. 구유재산목록(명세서)(별지 제43호서식)

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2호 서식]

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

1. 사용 신청인(직위) **성명**

2.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

관사번호	관리번호	소 재 지	면 적		비 고
			대 지	건 물	

3. 사용 신청기간 : . . . ~ . . .

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 (인)

중 구 청 장 귀 하

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.

20 . . .

중 구 청 장 ㊞

[별지 제42호 서식]

공 유 재 산 현 황 (총 괄 표)

1. 재산총괄

(단위: ㎡, 천원)

부서 (동)	토 지		건 물		공 작 물		선 박		입 목 죽		무체재산 등		금액합계
	면적	금액	면적	금액	식	금액	ton	금액	주	금액	건	금액	
계													

2. 행정재산

(단위: ㎡, 천원)

기관별	토 지		건 물		공 작 물		선 박		입 목 죽		무체재산 등		금액합계
	면적	금액	면적	금액	식	금액	ton	금액	주	금액	건	금액	
계													

3. 일반재산

(단위: ㎡, 천원)

기관별	토 지		건 물		공 작 물		선 박		입 목 죽		무체재산 등		금액합계
	면적	금액	면적	금액	식	금액	ton	금액	주	금액	건	금액	
계													

[별지 제43호 서식]

공 유 재 산 목 록(명 세 서)

재산의 종별 : 기관명 :

(단위: ㎡)

번 호	재산의 구분	소 재 지	지 번	지 목 (구조)	지 적 (연면적)	대 장 금 액

(주) 재산의 종별(행정재산, 보존재산, 잡종재산) 및 재산의 구분별(토지, 건물, 공작물 등)로 각각 작성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구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생 략)	제6조(구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	②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다음 각목의 행정재산·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용도폐지 가.특별시·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(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나.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.군 지역(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)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	<삭 제>
제19조(인수인계)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.	제19조(인수인계) ----------. ----------.
1. 구유재산현황(총괄표)	1. 구유재산현황(총괄표)(별지 제42호서식)
2. 구유재산목록(명세서)	2. 구유재산목록(명세서)(별지 제43호서식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